

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679,951,914 | 20,398,557 |
| 일반회계 | 661,055,489 | 19,831,665 |
| 특별회계 | 18,896,425 | 566,893 |
| 기타특별회계 | 18,896,425 | 566,893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3,908,334 | 117,250 |
| 의료급여특별회계 | 859,660 | 25,790 |
| 자활기금특별회계 | 1,506,384 | 45,192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27,099 | 813 |
|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| 96,235 | 2,887 |
|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| 700 | 21 |
|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| 896,272 | 26,888 |
|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| 5,411,367 | 162,341 |
| 장흥담관연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| 2,534,672 | 76,040 |
|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| 3,402,839 | 102,085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42,218 | 1,267 |
| 장흥군건축진흥특별회계 | 210,645 | 6,319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2023년 제3회 추경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

제 6 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638,886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, 교부금(세)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(명시이월 포함)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